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1. 성실납세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유지하고, 2028년 1월 시행 예정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는 폐지함(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삭제).
2.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일몰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안 제89조제6항제1호).
3. 과세자료 제출 기관 중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자에 한정하지 않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까지로 확대함(안 제264조의2제7호).

II. 검토의견

1.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관련 부칙 조항 병행 삭제 필요
(안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 관련)

관세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는 정기 관세 조사 대상(연간 수입액 3천 만불 이상)에서 제외되어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세액검증 사각지대

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사등을 통해 자율적인 성실신고 확인을 유도하고자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관세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제도임.¹⁾

개정안은 성실신고 확인기한 및 성실납세 신고방법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바, 현행 관세 납세신고제도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의 폐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관세법」의 해당 조항(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을 삭제하여 개정 이전의 법률로 복원하려는 것인데,

2024년 12월 31일 「관세법」 공포 당시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하였던 “제9조제4항,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6호”의 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법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

<월별성실납세신고제도 폐지 관련 수정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법률 제20608호 관세법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3399호)[법률 제20608호, 2024. 12. 31., 일부개정], [시행 2025. 1. 1.]

2) 예를 들어 2024년 12월 31일에 공포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문에는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를 “제38조 및 제38조의5”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와 같이 규정하여, 당시 제6호를 제7호로 이동한 다음 제6호를 신설하였는바,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부칙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존속시킬 경우 2028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제39조제1항의 “제6호”가 무엇인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2. (생략) <u>3.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 2028년 1월 1일</u> <u>제2조(성실납세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 제38조의5,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2조(현행과 같음)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 1·2.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

2. 그 밖의 체계·자구 수정 필요사항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주서본 참조).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화 필요) 안 제264조의2제7에서는 과세자료제출기관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데,³⁾ 자료제출기관으로 지정되면 관세청장이 요청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므로,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⁵⁾.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3) 안 제264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제264조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관세법」 제264조(과세자료의 요청) 관세청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계되는 자료 또는 통계를 요청할 수 있다.

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